원금 손실가능 상품

위임장 (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용)

1. 대리인 정보

성 명		본인과의 관계	
생년월일		연 락 처	
주 소			

담당	책임자
본인확인 및 인감(서명)확인 인/서명	

2. 위임내용

■ **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및 투자성향 분석 결과 확인**

본인은 본인의 투자성향을 잘 알고 있는 대리인에게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 등을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을 위임하며, 이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6조2항 및 3항의 적합성 원칙 등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.

- 본인의 투자목적,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판매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행위

■ **모델포트폴리오의 선택**

투자성향 분석 결과에 따라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투자권유 받았으며, 대리인의 판단과 본인의 책임으로 대리인이 지정하는 모델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한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■ **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가입(연장)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**

본인은 대리인에게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가입(연장)과 관련한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에 대한 판단, 상품결정, 가입(연장)서류 작성, 제반 서류 사본 및 통장 수령 등의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.

■ **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동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**

하나은행과의 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·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제32조제1항, 제33조 및 제34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본인은 위의 대리인에게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거래에 있어 실명확인, 서류작성, 상품설명, 위험고지 및 서류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, 대리인의 행위와 관련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 본인(위임인) 성 명 : 인/서명

생년 월일 :

주 소 :

연 락 처 :

※ 대리인 서류 구비시 유의사항

·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

·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발급 유효기간 : 최근 3개월 이내

명의인	대리인	구비서류
성년	가족	본인/대리인 실명확인증표, 가족관계확인서류, 사용인감, 일임형ISA 위임장
	가족 외	본인/대리인 실명확인증표, 본인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일임형ISA 위임장

직원 기재 사항	본인 앞 위임사실 확인함
	위임내용 확인일시
	직위 직원명 인/서명

5-21-0001(1-1) (2021.01 개정)
(보존년한 : 해지일로부터 10년)

하나은행